

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

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1. 건명: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·제21조·제22조,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(2020.5.18.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환수금액	주소	내용	송달불능사유
김다*	75.01.25	500,000원	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-15, *	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미차감에 의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오지급 관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1. 6. 11. ~ 2021. 6. 25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서울강서고용복지+센터 유란희(☎ 02-2063-67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